

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발 의 자: 이용균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형재, 남창진, 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 송재혁, 오금란, 유정희, 이상훈, 이영실, 이종태, 이종환, 임종국, 정준호, 최재란, 허 훈, 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,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절약 문화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항제3호).
- 나.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규정을 명시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

나. 서울특별시의회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제6조의 제목“(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)”을“(절수설비 등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법 제15조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① 건축주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(객

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 및 목욕장업 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5조제1항의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설
2. 그 밖에 시장이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
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
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

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
다.

②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
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
박업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
는 제외한다) 및 목욕장업 또는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
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
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
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5조제1항의 “조례로
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
시설을 말한다.

1.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
설
2.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
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
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시설

④ -----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. ---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절수설비의 종류 및 설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